

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

(3쪽 중 제1쪽)

연결사업연도		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	--	------	--	---------	--

1. 연결법인간 출자현황

가. 직접소유(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)

① 연결자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③ 발행주식총수	④자본금 (출자총액)	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		출자법인(모법인) 현황				
				⑤출자주식수	⑥출자금액	⑦법인명	⑧사업자등록번호	⑨출자주식수	⑩출자금액	⑪출자비율

나. 합동소유(2개 이상의 연결법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)

⑫ 연결자법인명	⑬ 사업자등록번호	⑭ 발행주식총수	⑮자본금 (출자총액)	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		출자법인(모법인 및 다른 자법인) 현황				
				⑯출자주식수	⑰출자금액	⑱법인명	⑲사업자등록번호	⑳출자주식수	㉑출자금액	㉒출자비율

다. 연쇄소유(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)

㉓ 연결자법인명	㉔ 사업자등록번호	㉕ 발행주식총수	㉖자본금 (출자총액)	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		출자법인(해당 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다른 자법인) 현황				
				㉗출자주식수	㉘출자금액	㉙법인명	㉚사업자등록번호	㉛출자주식수	㉜출자금액	㉝출자비율

2.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

가. 연결법인에 대한 접대비 지출내역

접대비지출 법인		접대 받은 연결법인		③⑧접대비 지출액 계(③⑨+④①)	③⑨사적 사용 경비 등 손금 불산입액	④① 접대비 해당액	④①접대비 해당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
③④법인명	③⑤사업자등록번호	③⑥법인명	③⑦사업자등록번호				
		계					
		계					

나.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액 및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

채 권 자		채 무 자		④⑥ 채 권 총액	④⑦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 권	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		
④② 법인명	④③ 사업자등록번호	④④ 법인명	④⑤ 사업자등록번호			④⑧손금산입액	④⑨한도초과액 상당액	⑤① 차감액(④⑧-④⑨)
		채권자별 계						
		채권자별 계						

다.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 양도거래 및 양도손익 조정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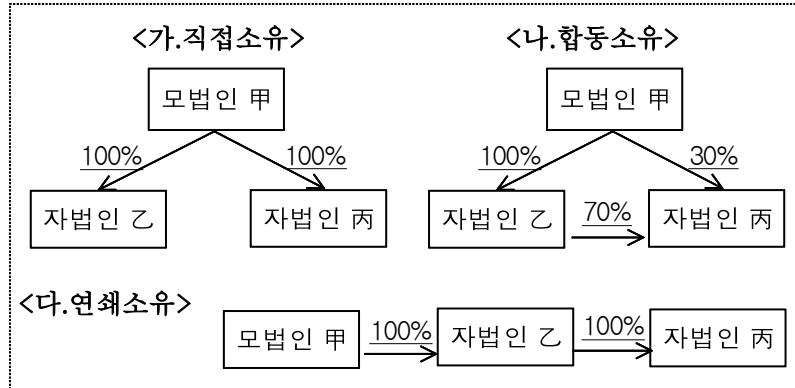
양도법인		양수법인		자산종류			⑤⑧ 양도가액	⑤⑨ 장부가액	⑥① 양도손실	해당사업연도 실현이익(손실)		이연대상 자산 양도손익 조정액	
⑤①법인명	⑤②사업자 등록번호	⑤③법인명	⑤④사업자 등록번호	⑤⑤구분	⑤⑥ 코드	⑤⑦과목 (항목)				⑥②익금 산입	⑥③손금 산입	⑥④양도소득 (⑥②-⑥③)	⑥⑤양도손실 (⑥①-⑥③)
		양도법인별 계											
		양도법인별 계											

* 구분 : 유형자산, 무형자산, 채권, 금융투자상품, 토지와 건축물

작성 방법

<1. 연결법인간 출자현황>

1.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에 따라 "가. 직접소유", "나. 합동소유", "다. 연쇄소유"의 유형별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
2. ③발행주식 총수란 :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적습니다.
3.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주식의 ⑤·⑯·⑳출자주식수 및 ⑥·⑰·㉑출자금액란 :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120조의1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을 적습니다.
4. ①·⑫·㉒연결자법인명 및 ②·⑬·㉓사업자등록번호란 : 위"1"의 연결집단 모형에서 자법인 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5. 가. 직접소유(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)의 ⑦법인명 및 ⑧사업자등록번호란 : 위 "1"의 가. 직접소유에서 모법인 甲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6. 나. 합동소유(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)의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)의 ⑩법인명 및 ⑨사업자등록번호란: 위 "1"의 나. 합동소유에서 모법인 甲 및 자법인 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7. 다. 연쇄소유(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)의 ㉔법인명 및 ㉕사업자등록번호란 : 위 "1"의 다. 연쇄소유의 자법인 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<2.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>

8. ㉖접대비 해당액란 : 접대비 계정금액 총액에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㉗사적사용 경비등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9. ㉘손금산입액란 :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적습니다.
10. ㉙한도초과액상당액란 : "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(별지 제34호서식)의 ⑦한도초과액 중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전체 대손충당금에서 차지하는 금액(산식: 한도초과액 ×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÷ 전체 대손충당금)을 적습니다.
11. ㉚구분란 및 ㉛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이연자산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.

종 류	유형자산 (건축물 제외)	무형자산	채 권	금융투자 상품	토지·건물
코 드	100	101	102	103	104

12. ㉜양도가액 및 ㉝장부가액란 : 해당 이연자산의 세무상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각 적습니다.
13. ㉞양도소득 및 ㉟양도손실란 :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총액을 적습니다.
14. ㊱익금산입란 :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㉞양도소득 중 해당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
15. ㊲손금산입란 :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㉟양도손실 중 해당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
16. ㊳양도소득 및 ㊴양도손실란 : 해당 사업연도 이후로 이연되는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을 각각 적습니다.